

---

2017년
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---

2018. 1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# 순서

I. 신출 기준 .....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.....	2
II-1. 전체 사건 .....	2
II-2. 일반 사건 .....	3
III. 용어 정의 .....	4

## I. 산출 기준

### 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7. 1. 1. ~ 2017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\*을 갖추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\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### II-1. 전체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 각하 개시율	1,381 1,035 (57.2)	326 173 (65.3)	340 309 (52.4)	305 194 (61.1)	15 10 (60.0)	9 6 (60.0)	38 15 (71.7)	216 221 (49.4)	109 83 (56.8)	19 23 (45.2)	2 1 (66.7)	- - -	- - -	- - -
서울	개시 각하 개시율	426 328 (56.5)	141 78 (64.4)	63 66 (48.8)	80 52 (60.6)	- 5 (0.0)	5 2 (71.4)	5 2 (71.4)	86 87 (49.7)	40 30 (57.1)	5 6 (45.5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
부산	개시 각하 개시율	88 83 (51.5)	19 10 (65.5)	14 21 (40.0)	26 17 (60.5)	1 1 (50.0)	- - -	4 1 (80.0)	15 20 (42.9)	7 9 (43.8)	2 3 (40.0)	- 1 (0.0)	- - -	- - -	- - -
인천	개시 각하 개시율	88 70 (55.7)	18 21 (46.2)	20 26 (43.5)	26 11 (70.3)	1 - (100.0)	- 1 (0.0)	2 - (100.0)	13 5 (72.2)	7 6 (53.8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대구	개시 각하 개시율	55 39 (58.5)	25 9 (73.5)	7 6 (53.8)	13 15 (46.4)	2 1 (66.7)	- - -	1 - (100.0)	5 6 (45.5)	2 - (100.0)	- 2 (0.0)	- - -	- - -	- - -	- - -
광주	개시 각하 개시율	42 31 (57.5)	13 4 (76.5)	11 5 (68.8)	11 7 (61.1)	- 1 (0.0)	2 - (100.0)	2 1 (66.7)	2 9 (18.2)	1 4 (2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대전	개시 각하 개시율	59 30 (66.3)	9 2 (81.8)	30 11 (73.2)	8 5 (61.5)	- - -	- 1 (0.0)	- 1 (0.0)	7 7 (50.0)	5 3 (62.5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울산	개시 각하 개시율	22 16 (57.9)	4 4 (50.0)	8 3 (72.7)	9 3 (75.0)	- - -	- - -	- 1 (0.0)	- 4 (0.0)	- 1 (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세종	개시 각하 개시율	4 5 (44.4)	- - -	- - -	- 1 (0.0)	- - -	- - -	- - -	3 2 (60.0)	1 2 (33.3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경기	개시 각하 개시율	299 226 (57.0)	36 30 (54.5)	87 84 (50.9)	78 43 (64.5)	6 1 (85.7)	2 - (100.0)	12 4 (75.0)	47 40 (54.0)	26 19 (57.8)	3 5 (37.5)	2 - (100.0)	- - -	- - -	- - -
강원	개시 각하 개시율	32 31 (50.8)	4 1 (80.0)	18 20 (47.4)	2 5 (28.6)	1 - (100.0)	- - -	1 - (100.0)	4 5 (44.4)	2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충북	개시 각하 개시율	37 21 (63.8)	5 4 (55.6)	15 5 (75.0)	10 2 (83.3)	- - -	- 1 (0.0)	1 - (100.0)	4 6 (40.0)	2 1 (66.7)	3 2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충남	개시 각하 개시율	49 27 (64.5)	15 3 (83.3)	13 6 (68.4)	5 4 (55.6)	- - -	- - -	2 2 (50.0)	8 11 (42.1)	3 1 (75.0)	3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전북	개시 각하 개시율	31 25 (55.4)	12 3 (80.0)	5 4 (55.6)	9 7 (56.3)	- - -	- 1 (0.0)	2 1 (66.7)	1 7 (12.5)	1 2 (33.3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전남	개시 각하 개시율	21 20 (51.2)	3 1 (75.0)	4 9 (30.8)	9 6 (60.0)	- - -	- - -	1 2 (33.3)	3 2 (6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	- - -
경북	개시 각하 개시율	37 34 (52.1)	- - -	17 17 (50.0)	8 8 (50.0)	1 - (100.0)	- - -	3 - (100.0)	4 2 (66.7)	3 2 (60.0)	1 5 (16.7)	- - -	- - -	- - -	- - -
경남	개시 각하 개시율	76 41 (65.0)	22 3 (88.0)	21 20 (51.2)	11 8 (57.9)	3 - (100.0)	- - -	2 - (100.0)	10 8 (55.6)	5 2 (71.4)	1 - (100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
제주	개시 각하 개시율	15 8 (65.2)	- - -	7 6 (53.8)	- - -	- 1 (0.0)	- - -	- - -	4 - (100.0)	3 1 (75.0)	1 - (100.0)	- - -	- - -	- - -	- - -

\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## II-2. 일반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오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	
계	개시	998	178	209	258	15	8	13	187	108	18	2	2	-	-	-
	각하	1,035	173	309	194	10	6	15	221	83	23	-	1	-	-	-
	개시율	(49.1)	(50.7)	(40.3)	(57.1)	(60.0)	(57.1)	(46.4)	(45.8)	(56.5)	(43.9)	(100.0)	(66.7)	-	-	-
서울	개시	316	78	38	69	-	4	2	79	40	5	1	-	-	-	-
	각하	328	78	66	52	5	2	2	87	30	6	-	-	-	-	-
	개시율	(49.1)	(50.0)	(36.5)	(57.0)	(0.0)	(66.7)	(50.0)	(47.6)	(57.1)	(45.5)	(100.0)	-	-	-	-
부산	개시	67	8	8	26	1	-	2	13	7	2	-	-	-	-	-
	각하	83	10	21	17	1	-	1	20	9	3	-	1	-	-	-
	개시율	(44.7)	(44.4)	(27.6)	(60.5)	(50.0)	-	(66.7)	(39.4)	(43.8)	(40.0)	(0.0)	(0.0)	-	-	-
인천	개시	57	3	13	22	1	-	-	10	7	1	-	-	-	-	-
	각하	70	21	26	11	-	1	-	5	6	-	-	-	-	-	-
	개시율	(44.9)	(12.5)	(33.3)	(66.7)	(100.0)	(0.0)	(0.0)	(66.7)	(53.8)	(100.0)	-	-	-	-	-
대구	개시	31	10	4	8	2	-	-	5	2	-	-	-	-	-	-
	각하	39	9	6	15	1	-	-	6	-	2	-	-	-	-	-
	개시율	(44.3)	(52.6)	(40.0)	(34.8)	(66.7)	-	-	(45.5)	(100.0)	(0.0)	-	-	-	-	-
광주	개시	32	7	9	10	-	2	2	2	-	-	-	-	-	-	-
	각하	31	4	5	7	1	-	1	9	4	-	-	-	-	-	-
	개시율	(50.8)	(63.6)	(64.3)	(58.8)	(0.0)	(100.0)	(66.7)	(18.2)	(0.0)	-	-	-	-	-	-
대전	개시	45	8	19	7	-	-	-	6	5	-	-	-	-	-	-
	각하	30	2	11	5	-	1	1	7	3	-	-	-	-	-	-
	개시율	(60.0)	(80.0)	(63.3)	(58.3)	-	(0.0)	(0.0)	(46.2)	(62.5)	-	-	-	-	-	-
울산	개시	16	3	5	7	-	-	-	-	1	-	-	-	-	-	-
	각하	16	4	3	3	-	-	1	4	1	-	-	-	-	-	-
	개시율	(50.0)	(42.9)	(62.5)	(70.0)	-	-	(0.0)	(0.0)	(0.0)	(100.0)	-	-	-	-	-
세종	개시	3	-	-	-	-	-	-	2	1	-	-	-	-	-	-
	각하	5	-	-	1	-	-	-	2	2	-	-	-	-	-	-
	개시율	(37.5)	-	-	(0.0)	-	-	-	(50.0)	(33.3)	-	-	-	-	-	-
경기	개시	213	16	44	69	6	2	3	42	26	3	-	2	-	-	-
	각하	226	30	84	43	1	-	4	40	19	5	-	-	-	-	-
	개시율	(48.5)	(34.8)	(34.4)	(61.6)	(85.7)	(100.0)	(42.9)	(51.2)	(57.8)	(37.5)	(100.0)	-	-	-	-
강원	개시	22	1	14	1	1	-	-	3	2	-	-	-	-	-	-
	각하	31	1	20	5	-	-	-	5	-	-	-	-	-	-	-
	개시율	(41.5)	(50.0)	(41.2)	(16.7)	(100.0)	-	-	(37.5)	(100.0)	-	-	-	-	-	-
충북	개시	24	3	7	8	-	-	-	4	2	-	-	-	-	-	-
	각하	21	4	5	2	-	1	-	6	1	2	-	-	-	-	-
	개시율	(53.3)	(42.9)	(58.3)	(80.0)	-	(0.0)	(0.0)	(40.0)	(66.7)	(0.0)	-	-	-	-	-
충남	개시	38	12	10	3	-	-	1	6	3	3	-	-	-	-	-
	각하	27	3	6	4	-	-	2	11	1	-	-	-	-	-	-
	개시율	(58.5)	(80.0)	(62.5)	(42.9)	-	-	(33.3)	(35.3)	(75.0)	(100.0)	-	-	-	-	-
전북	개시	23	10	5	5	-	-	-	1	1	1	-	-	-	-	-
	각하	25	3	4	7	-	1	1	7	2	-	-	-	-	-	-
	개시율	(47.9)	(76.9)	(55.6)	(41.7)	-	(0.0)	(0.0)	(12.5)	(33.3)	(100.0)	-	-	-	-	-
전남	개시	14	2	2	7	-	-	-	2	1	-	-	-	-	-	-
	각하	20	1	9	6	-	-	2	2	-	-	-	-	-	-	-
	개시율	(41.2)	(66.7)	(18.2)	(53.8)	-	-	(0.0)	(50.0)	(100.0)	-	-	-	-	-	-
경북	개시	22	-	8	6	1	-	2	2	3	-	-	-	-	-	-
	각하	34	-	17	8	-	-	-	2	2	5	-	-	-	-	-
	개시율	(39.3)	-	(32.0)	(42.9)	(100.0)	-	(100.0)	(50.0)	(60.0)	(0.0)	-	-	-	-	-
경남	개시	62	17	17	10	3	-	1	7	5	1	-	-	-	-	-
	각하	41	3	20	8	-	-	-	8	2	-	-	-	-	-	-
	개시율	(60.2)	(85.0)	(45.9)	(55.6)	(100.0)	-	(100.0)	(46.7)	(71.4)	(100.0)	(100.0)	-	-	-	-
제주	개시	13	-	6	-	-	-	-	3	3	1	-	-	-	-	-
	각하	8	-	6	-	1	-	-	-	1	-	-	-	-	-	-
	개시율	(61.9)	-	(50.0)	-	(0.0)	-	-	(100.0)	(75.0)	(100.0)	-	-	-	-	-

\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### Ⅲ. 용어 정의

#### 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##### 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##### 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##### 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#### 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##### 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#### 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#### 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**요양병원**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**의원**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치과의원**

-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한의원**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**약국**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**보건소(보건지소)**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**보건의료원**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



○ 조산원

-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·해산부·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2호)